제2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2. 2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2월 25일

전문위원 이 한 진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19-3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제출일자: 2019년 1월 31일

라. 회부일자: 2019년 2월 13일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근거되는 조문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 대상자 범위를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개정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1. 2.~1. 22.) 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1조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를 제3조로 변경, 상위법령 개정사항[1]을 반영하였고,

○ 안 제9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를 인용, 상위법령 개정사항[2]을 반영하였으며,

○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였음.

---

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55호, 2012. 3. 13., 전부개정]
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91호, 2016. 6. 7., 일부개정]

다. 종합의견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임.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붙임 관계법령 1부.

붙임 1 관계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정 전)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